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98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김미애 · 김은혜 · 김소희
서지영 · 성일중 · 이종배
김상훈 · 박정하 · 송석준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 50조의3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대별 공무원 경력개발, 전보 등에 관한 사항
2. 세대별 공무원 분포 및 충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인재개발)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0조(인재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조직 신설, 관련 공무원 증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제50조의3(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u> <u>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세대별 공무원 경력개발, 전보 등에 관한 사항</u> <u>2. 세대별 공무원 분포 및 충원</u>

	<u>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그 밖에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u>
--	---